

“소비자는 소득공제 40%, 판매자는 수수료 0%” 정답은 제로페이!

# 서울특별시



수신 내부결재  
(경유)

제목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송(등기)

1.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(전용차로의 설치) 및 제160조 제3항(과태료)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와 관련입니다.

2. 무인카메라와 버스장착형카메라 및 시민신고에 의해 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전 자진납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차량 소유주에게 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합니다.

가. 위반일시(렌트카 변경 재부과) : `18.09.14 ~ `19.01.27

- 무인감시카메라(통행위반) : `19.01.28 ~ `19.02.10

- 주행형, PDA단속(시민신고) : `18.11.10 ~ `19.02.10

나. 통보건수 : 어미현 등 9,050명

다.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현황

구분	건 수	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				적 발 제 외	
		소 계	CCTV (통행위반)	기 동(PDA) (주행형)	시민 신고	서순 건수	제외사유
금회	10,517	9,050	8,931	4	115	1,467	- 연속단속 - 진입구간 짧음
전회 누계	8,520	8,001	7,779	11	211	519	- 자납 - 대납
누계	19,037	17,051	16,710	15	326	1,986	- 기타

라. 통보방법 : 자동차 소유주에게 등기우편 발송

마. 의견진술기한 및 사전납부일 : `19.02.19 ~ `19.03.11(20일간)

붙임: 1. 사전통보 등기발송 내역. 1부.

2. 적발제외 내역 1부. 끝.

